

대구지방법원 2022. 6. 29 선고 2021나321024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6. 29 선고 2021나321024 판결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. 8. 18 선고 2020가단331 판결

## 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덕

변론종결 2022. 4. 27.

판결선고 2022. 6. 29.

제1심판결 [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. 8. 18. 선고 2020가단331 판결](#)

## 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지상 세멘트브록조 78㎡의 무허가 단층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, 위 토지 78㎡를 인도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[민사소송법 제420조](#)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서영애, 판사 김형태, 판사 박치봉

[별지](#)